

서울특별시 성북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5. 10. 23.(목)
도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 9. 25. 정해숙 의원 외 11인 발의 (의안번호 524호)
- 나. 회부일자: 2025. 10. 14.
- 다. 상정일자: 제31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2025. 10. 20. 상정 · 의결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정해숙 의원)

가. 제안이유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도심 내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시설물, 공중보건 및 생활상 등의 피해를 예방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 · 변경 및 해제 · 표시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6조)
- 먹이주기 금지구역의 홍보, 피해예방 및 안전보호, 과태료 부과 · 징수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제9조)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2항
- 예산조치: 필요시 예산편성
- 협의사항: 공원녹지과
- 입법예고: 2025. 9. 30. ~ 2025. 10. 4.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송세창)

가. 개요

-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관내 특정 지역에서 유해야생동물의 밀집으로 인한 재산 및 생활상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먹이주기 금지와 금지구역 지정, 안내표지 설치 및 홍보 등을 포함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피해를 예방·저감하고, 구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나. 검토 내용

- 본 조례 제정안은 상위법령에서 유해야생동물에 대한 먹이주기의 금지 또는 제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어, 이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려는 취지로 사료됨.
- 본 조례안은 총 10개의 조문으로 구성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 안 제1조·제2조 : 조례의 목적과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
 - ▶ 안 제3조 :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
 - ▶ 안 제4조 : ‘도시공원’, ‘기반시설’, ‘보호구역’, ‘하천’ 등 일정 지역을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그 구역에서는 유해야생동물에 대한 먹이주기를 금지함.
 - ▶ 안 제5조 : 금지구역 지정 절차(주민·관계기관 의견수렴, 구보 고시 등)와 공개 사항을 규정함.
 - ▶ 안 제6조 : 금지구역의 지정 변경·해제 절차를 마련하고, 단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변경의 경우 의견수렴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 ▶ 안 제7조 : 금지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및 표시사항·규격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함.
- ▶ 안 제8조 : 먹이주기 금지의 효과적 시행을 위한 홍보활동 및 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
- ▶ 안 제9조 : 점검·단속 등 피해예방 및 안전보호 사업의 추진 근거를 규정함.
- ▶ 안 제10조 : 금지구역 내 먹이주기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규정함.

다. 종합 의견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해야생동물’은 사람의 생명 또는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환경부령이 정한 종을 의미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에 집비둘기·멧돼지·맹수류 등이 명시되어 있음. 본 조례 제정안은 이러한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에서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 세부 사항을 자치법규로 정하여 현장 집행의 근거와 절차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 특히, 집비둘기 개체수 증가와 서식 밀도 고착의 주요 원인이 인위적 먹이 공급과 천적 부재 등에 기인함을 감안할 때, 금지구역 지정 및 먹이주기 금지의 제도화는 개체수의 체계적 관리, 배설물로 인한 위생·환경오염 및 주민 불편 완화, 공중보건 위험 저감에 실질적 기여가 기대됨. 이를 통해 사람과 야생생물의 공존을 도모하는 건전한 도시 생태환경 조성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본 조례 제정안은 금지구역 지정-표시-홍보-제재로 이어지는 관리 체계를 통해 정책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향후 ① 표지판 설치 및 고시 등 현장 고지 강화, ② 과태료 부과 사실·기준의 적극적 홍보, ③ 초기 계도기간 운영 및 교육·캠페인 병행 등을 통해 주민 수용성과 준수율 제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종합하면, 본 조례안의 제정은 필요성과 적정성이 확인되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수정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돌곶이·상월곡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2025. 10. 23.(목)
도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 10. 1. 성북구청장 제출 (의안번호 514호)
나. 회부일자: 2025. 10. 14.
다. 상정일자: 제31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2025. 10. 20. 상정 · 의결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최재준 도시관리국장)

가. 제안이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주민제안을 통해 접수된 돌곶이·상월곡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 같은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정비계획(안) 주요내용

1) 정비구역 위치 및 면적

| 구 분 | 정비사업 명칭 | 위 치 | 면 적(㎡) | | | 비 고 |
|-----|-------------------------------------|------------------------|--------|------------|----------|-----|
| |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 신설 | 돌곶이·상월곡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성북구 장위동 66-300번지 일대 | - | 증)94,411.1 | 94,411.1 | - |

2) 정비계획(안)

가) 토지이용계획(안)

| 구 분 | 명 칭 | 면 적(m ²) | 비율(%) | 비 고 |
|----------|------|----------------------|-------|----------|
| 합 계 | | 94,411.1 | 100.0 | - |
| 정비기반시설 등 | 소 계 | 28,416.4 | 30.1 | - |
| | 도로 | 18,059.6 | 19.1 | - |
| | 공원 | 8,866.4 | 9.4 | - |
| | 공원1 | 5,683.2 | 6.0 | - |
| | 공원2 | 3,183.2 | 3.4 | 주차장 중복결정 |
| | 문화시설 | 984.4 | 1.0 | 성북문화예술회관 |
| | 공공청사 | 506.0 | 0.5 | 우체국 |
| 택 지 | 소 계 | 65,944.7 | 69.9 | - |
| | 획지1 | 27,661.6 | 29.3 | 공동주택 |
| | 획지2 | 23,707.3 | 25.1 | 공동주택 |
| | 획지3 | 12,107.4 | 12.8 | 공동주택 |
| | 획지4 | 661.9 | 0.7 | 근린생활시설 |
| | 획지5 | 560.5 | 0.6 | 근린생활시설 |
| | 획지6 | 1296.0 | 1.4 | 종교시설(존치) |

※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주요내용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구 分 | 면 적 (m ²) | | | 구성비 (%) | 비 고 |
|-------|-----------------------|----------|-------------|----------|------|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
| 합 계 | 94,411.1 | - | 94,411.1 | 100.0 | - |
| 주거 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 74,050.3 | 감) 51,511.5 | 22,538.8 | 23.9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20,360.8 | 감) 11,964.8 | 8,396.0 | 8.9 |
| | 준주거지역 | - | 증) 63,476.3 | 63,476.3 | 67.2 |

2)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 위 치 | 용도지역 | | 면 적 (m ²) | 용적률 (%) | 결정(변경) 사유 |
|-----------------------|---------------------------------|-------|-----------------------|-------------|--|
| | 기 정 | 변 경 | | | |
| 장위동 66-300번지 일대 |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제2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63,476.3 | 459.5 이하 | 돌곶이·상월곡역세권의 공동주택 건립을 통해 노후된 주택지를 정비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을 촉진하고자 용도지역을 상향함 |

○ 추진현황

- 2017.03.30 : 재정비촉진구역 해제(市고시 제2017-122호)
- 2023.11.21 : 제11차 역세권주택 사전검토회의 개최
- 2024.04.05 :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2차 사전검토 신청
- 2024.07.05 :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2차 사전검토 재신청(구 → 시)
- 2024.07.22 :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전검토회의 완료(의견제시)
- 2024.12.26 :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재개발사업 입안제안
- 2024.12.27 : 정비계획 유관부서 협의
- 2025.07.21 :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계획검토회의 완료(의견제시)
- 2025.09.18 ~ 10.19 : 성북2구역 주민 공람공고(진행중)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2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송세창)

가. 개요

- 본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제1항제6호¹⁾에 따라 주민 제안을 통해 접수된 「돌곶이·상월곡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 같은 법 제15조 제2항²⁾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임.

1) 제14조(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① 토지등소유자(제5호의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되려는 자를 말한다) 또는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18.1.16, 2021.4.13., 2024.12.3>

6. 토지등소유자(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3분의 2 이상의 동으로 정비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다만, 제15조제3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

2) 제15조(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

①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정비계획을 입안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 및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정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제1항에 따른 주민공람과 함께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정비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 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나. 검토 내용

- 본 정비계획(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른 도시기반시설 정비와 연계하여 추진되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으로, 서울시가 추진 중인 역세권 고밀복합형 주택공급 정책의 방향과 대체로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됨. 특히, 과거 해제된 구(舊) 장위11구역 일대의 미개발지를 활용하여 공공 임대주택을 포함한 복합개발을 추진함으로써 지역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공공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는 적정한 것으로 사료됨.
- 대상지는 지하철 6호선 돌곶이역 및 상월곡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350m 이내의 1차 역세권에 해당하며,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 주거환경 개선이 요구되는 구역으로 사료됨. 이에 따라 역세권 공공주택 공급을 통한 서민 주거안정 및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하려는 정비계획의 수립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사료됨.

다. 종합 의견

- 인근 교통 여건 및 공공시설의 확보 방안 등은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의 수렴과 공공성 확보가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의 지속적인 관심과 점검을 통해 보다 면밀한 검토와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특히, 교통혼잡 완화 대책과 공원·주차장 등 공공시설의 실질적 확보 방안은 세부계획 단계에서 주민 의견과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반영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및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2025. 10. 23.(목)
도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 10. 1. 성북구청장 제출 (의안번호 515호)
- 나. 회부일자: 2025. 10. 14.
- 다. 상정일자: 제31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2025. 10. 20. 상정 · 의결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최재준 도시관리국장)

가. 제안이유

- 토지의 합리적 이용과 대학의 입지특성 및 주변지역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국민대학교에서 제안한 사항으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및 대학 세부시설조성 계획 결정(변경)(안)을 수립하여 주민 의견청취(열람공고)를 마치고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현재 나대지인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산1-214번지 일대 학교법인 소유 토지를 학교시설로 편입하여 제5캠퍼스로 조성하고자 함.
- 제5캠퍼스 편입면적 : 3,023m²
- 제5캠퍼스 내 건축물 신축(교육연구동) 계획을 반영하여 기 결정된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 금회 신축 : 제5캠퍼스 내 교육연구동
(주용도: 체육대학 교사시설 및 평생교육시설)
- ※ 제1~제4 캠퍼스는 금회 건축계획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송세창)

가. 개요

-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산1-214번지 일대의 학교법인 소유 토지를 학교시설로 편입하여 ‘제5캠퍼스’로 조성하고, ‘교육연구동’ 신축계획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이는 토지의 합리적 이용과 대학의 입지 특성 및 주변 지역과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대학교에서 제안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학교) 결정(변경) 및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안)을 수립하여 주민공람(열람공고)을 완료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³⁾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제3호바목⁴⁾(학교 중 대학)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임.

나. 검토 내용

- 본 안건은 국민대학교의 교육·연구 기능 강화를 위해 정릉동 산1-214번지 일대를 학교시설로 편입하고 교육연구동을 신축하고자 하는 도시관리 계획(도시계획시설: 학교) 결정(변경) 및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공람 및 관계기관 협의를 실시한 결과, 주민의견 제출 또는 관계 기관의 의견 제시는 없었음.
- 아울러 본 계획(안)은 국민대학교의 기존 캠퍼스 부지 협소 문제를 보완하고 교육·연구 기능을 확충하기 위한 것으로, 대학의 입지 특성과 주변 지역의 도시 구조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적정한 수준의 토지이용으로 사료됨.

3) 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제6항 :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함.

4) 시행령 제22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제7항제3호바목 : 법 제28조제6항에서 정한 대통령령 사항 중 하나로, ‘학교 중 대학’의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또는 변경결정을 포함함.

- 신축되는 교육연구동(지하 4층, 지상 4층, 높이 약 17.4m)은 백악산 명승지(제67호)와 인접하나, 「서울특별시 경관심의 기준」(앙각 27°, 높이 7.5m 완화구역)을 준수하고 있어 경관 훼손 우려도 크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며, 건축물의 외관 및 색채계획 역시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계획된 것으로, 도시계획적 측면에서의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사료됨.
- 관계기관(부서) 협의 결과, 교통·도로·환경·공공시설 등 분야별 의견은 대부분 계획(안)에 반영됨. 정릉로 진출입로 개선, 버스정류소 재배치, 장애인 보행 접근성 확보, 저영향개발(LID) 빗물관리시설 도입, 화장실 개방 등은 지역주민의 편의 증진과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또한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 기준을 반영하여 계획되었으며, 인접 문화유산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다. 종합 의견

- 종합적으로, 관계기관(부서) 협의 결과에 따른 조치계획이 제출한 대로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되며, 향후 사업시행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는 교통·보행·녹지·경관 등 세부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완·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5. 10. 23.(목)
도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 10. 1. 성북구청장 제출 (의안번호 516호)
- 나. 회부일자: 2025. 10. 14.
- 다. 상정일자: 제31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2025. 10. 20. 상정 · 의결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박정훈 건설교통국장)

가. 제안이유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무단방치 자전거의 재활용 및 기증에 대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무단방치 자전거의 재활용(안 제9조의2) 규정을 신설하여 방치자전거 처분 방법을 구체화하고자 함

다.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협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송세창)

가. 개요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리 절차를 구체화하고, 자원 재활용 및 사회적 기여(기증 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현행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서는 “무단방치 자전거에 대하여는 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분해·수리 후 재활용하거나 사회복지시설·저소득층 등에 기증하는 등 구체적인 처리 절차에 관한 조항은 없어 실무상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2022.9.21.) 및 「자전거법 시행령」 제11조제2항⁵⁾제4호의 위임에 따라, 방치자전거의 재활용 및 기증 근거를 조례에 명문화함으로써 행정의 일관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자원순환·복지증진·도시미관 개선을 함께 도모하고자 함.

나. 검토 내용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신규 조항을 추가한 것으로,
 - ▶ 안 제9조의2(무단방치 자전거의 재활용) 제1항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위임에 따라, 구청장이 수거한 무단방치 자전거를 단순 매각·폐기하는 대신 분해·수리 및 부품 교체를 통해 재생자전거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한 근거 규정임. 이

5)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

제11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지난 후에도 자전거 소유자가 자전거를 찾아가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보관 중인 자전거를 처분할 수 있다.

1. 매각.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일반재산의 매각의 예에 따르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자전거는 수의계약(隨意契約)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대금은 1년간 보관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귀속한다.
2. 기증
3. 법 제10조의2에 따른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에의 활용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

를 통해 자전거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환경적·경제적 효율성을 높이며, 현재 자활센터를 통해 추진 중인 재활용 실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행정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 제2항은 재생자전거의 활용 대상과 방법을 구체화한 조항으로, 생산된 자전거를 저소득가구·복지시설·교육기관 등에 기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환원 기능을 제도화한 것임. 기증 대상을 공익 목적의 기관·계층으로 한정함으로써 공공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 행정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려는 취지임.

다. 종합 의견

- 종합적으로 본 조항의 신설은 방치 자전거 처리 절차를 구체화함과 동시에, 환경보호·복지증진·공공자원 활용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